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s and Structure Evaluation System for Packaging Materials

##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의 이해

### Writer

김성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사관리팀 팀장

### Contents

- I. 추진배경
- II.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III.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및 신청서 제출
  - 1.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 2. 포장재 재질 · 구조 신청서 제출
- IV.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

### I. 추진배경

#### 1. 화장품 및 미용 포장 용기의 세계 시장

2018년 12월 24일 이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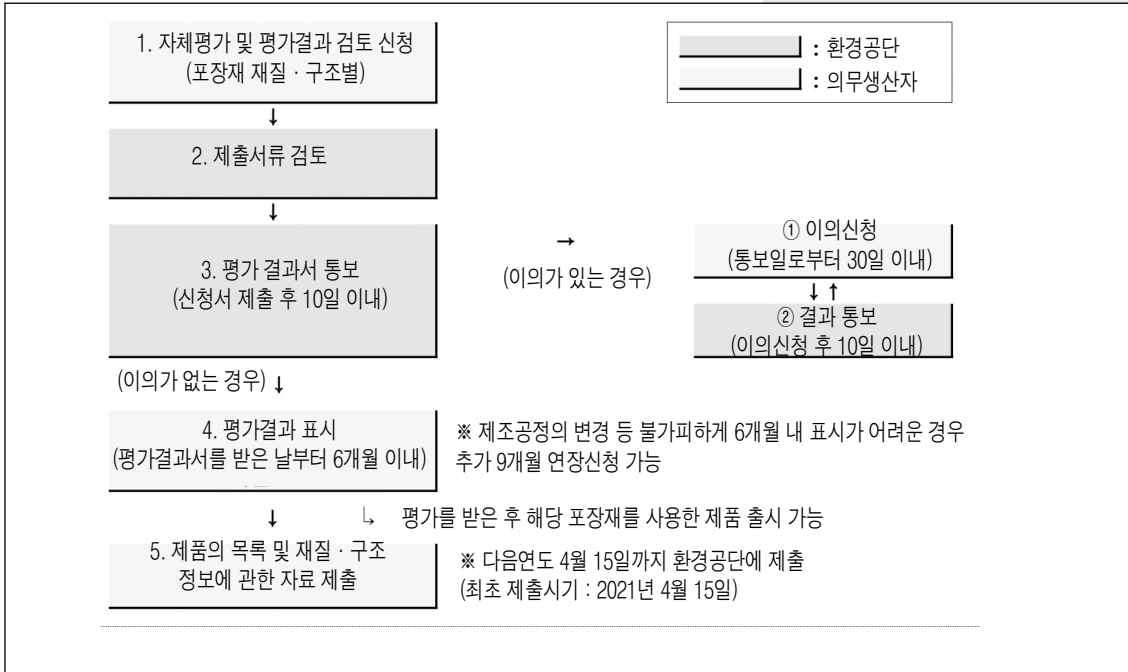
그러나 재질 · 구조개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조항과 미준수 시 제재 조항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질 · 구조개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을 도모하였다.

### II.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

[그림 1] 재질 · 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법”)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 41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2 호의 3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 제3조의 4, 제26조 제1호의 2, 제27조 제1항 제2 호 다목

3.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 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 2019-265호, ‘19.12.30)

4. 「포장재 재질 · 구조 등급표

시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0-39호, ‘20.2.17)

5.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 경부예규 제667호, ‘20.2.6)

### III.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및 신청서 제출

#### 1.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환경부에서는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 · 포장재 수 등을 감안

하여 법 시행 후 9개월간 (‘19.12.25~ ‘20.9.24) 제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생 산자가 제도기간(~ ‘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 재의 재질 · 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 당된다.

따라서 의무생산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포장재 재 질 · 구조에 대해 자체평가 를 한 후 환경공단의 전산시 스템(www.iepr.or.kr)을 통

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는 [그림 1]을 참고하면 된다.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도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토대로 제품 목록을 작성하되 누락된 포장재가 없도록 2019년도 신규 출시된 제품 목록은 추가하고 단종된 제품 목록은 삭제하는 등 EPR 포장재 사용제품을 포장재 종류별로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포장재 종류는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이어서 포장재 종류별로 재질·구조가 동일한 제품 리스트를 정리하고 포장재 제조업체 등을 통해 재질·구조 정보를 취합한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2에서 규정한 육안 판정 항목에

대해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육안판정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개선지원본부(02-6948-8784~8786, 8791~8793)로 육안판정 대행을 의뢰하면 된다.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정보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국내 제조제품의 경우 포장용기제조업체(부자재 공급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안판정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이 종료되면 포장재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육안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1에 따라 구성 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1차 등급 판정 후 구성 항목별 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 포장재의 최종 등급을 확정하면 자체평가가 종료된다.

## 2. 포장재 재질·구조 신청서 제출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가 종료되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인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제출 생략) 등을 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는 제품별 단위가 아니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1에서 제시된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구조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의 이해”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35페이지부터 43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환경공단에서는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를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와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공단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해준다.

#### IV.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는 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종합평가등급을 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표 1] 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기준	방법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 ·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 · 하 · 좌 · 우
기타	-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 표시 가능

「포장재 재질 · 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17)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 9월 24일까지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제조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재 겉면에 재질 · 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제2의 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까지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기한 연기신청서 제출하고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포장재 재질 · 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17) 제5조에 해당되는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둘째, 영 제16조 제1호 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 ·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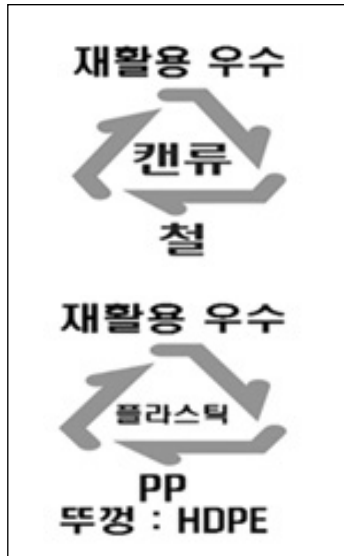
재를 말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셋째,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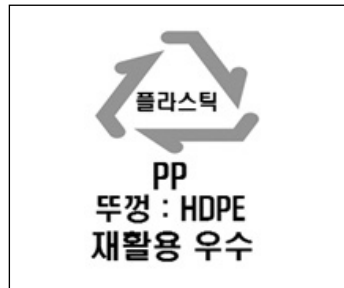
넷째,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이 해당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은 [표 1]과 같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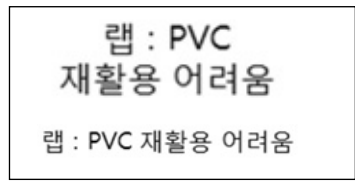
- 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를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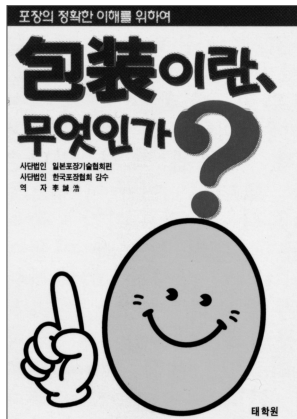
- 분리배출 표시를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 ②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2,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 서적 안내

### 포장이란 무엇인가?

국내 포장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만한 시간 '포장이란 무엇인가'가 출간됐다.

포장의 역사와 일반적인 지식,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했다. 한편, 대표적인 포장재료를 선정해 그 성질과 용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포장전반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기도 했다.